

산업피해 구제제도 어떻게 이루어지나!

본고는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농업통상소식 27호에 농림수산부 통상협력 2담당관실 정일정사무관이 발표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해설”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부—

수입농산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해설

1. 산업피해구제제도 일반사항

1)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요

◇ 우리나라는 '89년 10월에 취해진 GATT 국제수지위원회(BOP)의 권고에 따라 GATT 제18조 B항(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을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97년 7월까지 거의 모든 농수산물을 수입개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사후적으로 국내 산업을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이다.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산업피해조사를 거쳐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인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긴급히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동 제도운용에 대한 규정은 GATT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을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수입제한 조치나 관세조정 등)」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 제32~36조, 동법 시행령

제64~7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제 6 조에 규정되어 있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조치 등과는 달리 수출국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은 정상적인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수입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GATT상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음), 그 발동요건과 처리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수량규제·양허관세 철회시에는 이해관계 수출국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 GATT 분쟁 해결절차를 거쳐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주관부처인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2과(전화: 02-504-4816)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협력통상관실 통상협력 2담당관실(전화: 02-507-2649)에서 총괄하고 있다.

2) 산업피해구제 절차(표1절차도 참조)

(조사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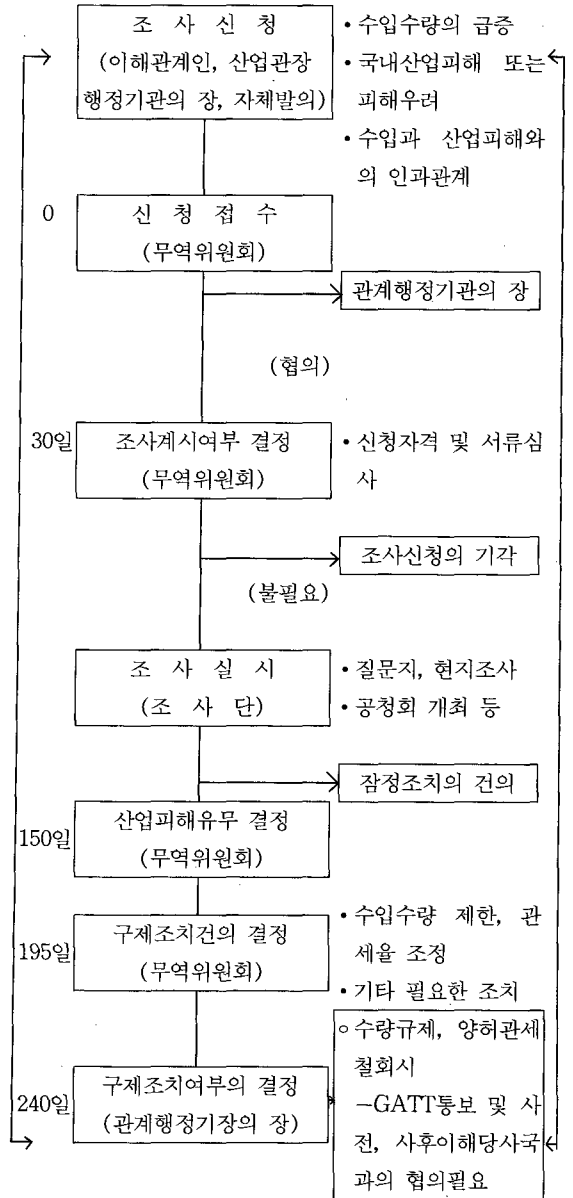
◇ 신청요건

-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표1.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절차도



해당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10인이상의 해당물품 생산자 해당 국내산업의 생산자로 구성된 협



회, 조합(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농림수산물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 산림청장, 수산청장)

〈조사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실시〉

◇ 조사단 : 무역위원회 및 해당 산업관장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해당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한다.

◇ 조사방법 : 질문지, 공청회, 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조사기한 :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잠정조치 : 조사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산업피해유무의 결정〉

◇ 무역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검토한 후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유무를 결정한다.

-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 사실여부 확인
- 당해 특정물품의 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여부

◇ 실질적인 피해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

- 공장폐쇄를 포함한 국내산업의 생산설비의 상당한 유희여부
- 상당수 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 국내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 국내산업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여부

◇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

- 국내산업에 있어서 판매, 시장점유율 및 가동율의 감소 또는 재고의 증가 여부
- 국내산업의 생산, 이윤, 고용의 감소 또는 자금의 인하추세여부

〈구제조치의 건의〉

◇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수량제한, 관세율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구제조치의 실시〉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제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제조치 결정시 검토사항은 당해 구제조치가 국제통

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

◇ 농림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조사신청은 「당해물품의 생산자 10인 이상, 또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신속한 구제조치를 위해 산정후 구제조치까지의 기간을 현행 300일에서 240일로 단축토록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성·계절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조사신청후 45일이내에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작업중에 있다. 이에 더하여, 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9조(산업피해 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의 피해판정 기준은 공산품 위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농산물에 대한 피해유무 판정기준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 이와 아울러, 농수산물의 산업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에 농림수산물의 산업피해구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 산업피해구제제도하에서는 피해조사신청시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 10명이상」이 「수입품목, 수입자, 수입실적, 피해상황 등 각

표2.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아 산업피해구제 조치내역

품 목	신 청 자	주요조치내용	기 간
새 우 젖	수협중앙회	수입수량제한 (수산청장 추천)	'89.1~'94.12.31
고 추 장	농협중앙회	수입수량제한 (보사부장관 추천)	'89.10.10~ '95.12.31
돼지고기통조림	대한양돈협회	관세율 인상(30~40%)	'90.5.19~ '93.6.30
나 무 젖 가 락	한국목할지류제품 공업협동조합	관세율 인상(13~53%)	'91.4.20~ '93.3.31
담 면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관세율 인상(11~60%)	'92.1.1~ '93.12.31

종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토록 되어 있어, 조직력이 미약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농어민의 피해 구제신청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피해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어민의 신청접수 및 절차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 이미, 농협은 조사부에 수입피해조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 농림수산물의 급증으로 산업피해를 입은 생산농민 등은 농협조사부 농업피해구제과(전화: 대표02-737-0021~9, 교환2461번), 축협조사부 시장조사과(전화: 02-485-1136), 수협 유통계획부(전화: 02-733-4994), 산림조합 임산부(전화: 02-416-9423)로 문의하여 산업피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동안의 농림수산물 산업피해구제조치 실시 현황은 표2의 내용과 같다. **한기**